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32
------	------

2022. 02. 0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1일, 이병도 의원 외 35명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건실한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근로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조례의 본래취지에 맞게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함.
- 나.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 다.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표현을 강소기업 지원으로 변경함(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라. 서울시는 강소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신설함(안 제12조제6호).
- 마. 조례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소기업 지원 조항에 삽입함(안 제12조제7호).
- 바. 강소기업 인증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하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내용과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나. 서울형강소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 서울시는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서울형 강소기업¹⁾(이하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강소기업은 서울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2만여 개를 대상으로 ▶ 일자리창출 성과, ▶ 고용안정성, ▶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등을 평가해 선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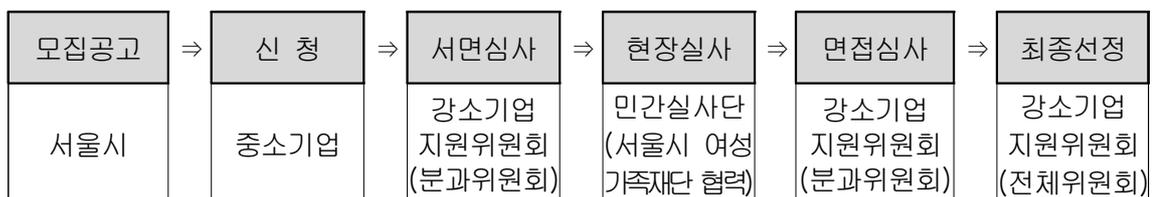
< 서울시에 소재한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 >

(기준 : 2021.12.31.)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수 (20,789개)	984	471	1,375	3,429	4,080	10,450

- 주로 ▶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 정규직 비중이 높고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청년친화적 기업이 선정됨.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절차 >



1) 규모는 작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선정한 기업

-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771개사가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 근무환경 개선금(1인 최대 15백만원, 최대 3명), ▶ 육아휴직자 대체를 위한 청년 인턴 인건비 지원(최대 23개월, 최대 3명) 등을 지원받고 있음.

< 서울형 강소기업 현황 >

(기준 : 2021.12.31.)

선정연도	신청기업 수	선정기업 수	협약해지	인증기업 수
합계	1,882	771	159	612
2021년	243	53	-	53
2020년	415	161	2	159
2019년	222	154	17	137
2018년	541	105	19	86
2017년	297	171	43	128
2016년	164	127	78	49

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1) 조례 제명 변경

- 개정안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년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강소기업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일·생활균형 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을 인증·지원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입법·정책적 의지를 조례 제명에 담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조례에서 강소기업은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안 제2조), 선정대상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명을 일·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서 규율하는 전체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u>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u>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우수한 청년 인재의 고용 촉진과 청년이 선호하는 근무환경을 가진 중소기업 유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조례의 적용대상인 기업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3) ‘강소기업 육성’ 을 ‘강소기업 지원’ 으로 변경(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강소기업 육성” 이라는 용어를 “강소기업 지원” 으로 일괄변경하고 있음.
- 이는 서울형 강소기업 사업이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다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채용 확대와 일·생활균형의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므로 “강소기업 지원” 보다는 “강소기업 육성·지원”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안 제12조제6호·안 제12조제7호)

- 개정안은 강소기업 지원내용에 ▶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제6호), ▶ 고용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7호)을 신설하고 있음.

- 이 중 안 제7호의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은 안 제13조에서 삭제된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내용을 강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5. (생략)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5. (현행과 같음) 6.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 7.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강소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강소기업 참여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청년고용 환경과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다만, 고용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예산 사정으로 인해 미시행 되고 있어 입법화의 실효성이 낮음²⁾.

(5)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등(안 제13조·안 제14조)

- 안 제13조는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고용환경 개선 실적 우수기업 인증사업’ 을 삭제하였음.

²⁾ 고용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와 협업으로 서울형 강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도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임.

- 안 제14조는 안 제1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 제목을 강소기업 인증 기간으로 바꾸고, 강소기업 인증 유효기간(2년)과 재인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p><u>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u></p> <p>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p> <p>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u>제14조(인증기간)</u>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p>	<p><삭 제></p> <p><u>제13조(강소기업 인증기간)</u> 강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p>

- 그러나 강소기업 대상이나 인증절차, 인증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없이 인증기간과 재인증 근거만을 담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한편,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증기간의 의미가 없어지고 우수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인증 가능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지원기간 최대 6년)하고, 재인증 시 평가를 통해 기준 점수 미달 시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재인증 절차를 강화하였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청년 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일·생활 균형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중소기업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명의 결정과 함께 중소기업 인증 절차, 재인증 기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제명을 일·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소기업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 적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현행대로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32
----------	---------

제안년월일 : 2022년 02월 0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제명을 일·생활균형으로만 국한하게 되면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강소기업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대표성으로 적합하지 않아 조례 제명을 현행대로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u>일·생활균형</u> 강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u>강소기업 육성</u>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업의”를 “우수한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로 한다.

제3조 중 “선정·육성·지원”을 “선정·지원”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종합육성계획 등)”을“(종합지원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고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종합육성계획”을 각각 “종합지원 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종합육성계획”을 “종합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소기업 인증서 교부

7.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의 제목“(인증기간)”을“(강소기업 인증기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에 따른”을 “강소
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u>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우수한</u> <u>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기</u> <u>업의</u> -----.</p>
<p>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강소기업의 <u>선정·육성·지원</u>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u>선정·</u> <u>지원</u>----- ----- -----.</p>
<p>제5조(종합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의 <u>체계적인 지원과 육성</u>을 위해 3년마다 <u>종합육성계획</u>을 수립·시행한다.</p> <p>② 시장은 <u>종합육성계획</u>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u>종합육성계획</u> 및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5조(종합지원계획 등) ① ----- <u>고</u> <u>용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u>----- <u>종합지원</u> <u>계획</u>-----.</p> <p>② ----- <u>종합지원계획</u>----- -----.</p> <p>③ ----- <u>종합지원계획</u> ----- ----- -----.</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 략)</p> <p>2. 제5조의 <u>종합육성계획</u>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p> <p>3. (생 략)</p>	<p>제9조(위원회의 기능)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종합지원계획</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12조(강소기업 지원)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12조(강소기업 지원)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강소기업 인증서 교부</u></p> <p>7. <u>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u></p>

6. (생략)

제13조(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①

시장은 강소기업 중 고용환경 진단·상담 및 고용개선 실적평가 등을 통해 고용환경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인증기간) 제13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해당 기업이 재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5조 ~ 제18조 (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삭제>

제13조(강소기업 인증기간) 강소기업 -----
-----.

-----.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